

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40일 (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기간 제외)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③ 성명(대표자)		
	④ 주소 (전화번호:)		
신청내용	⑤ 신청구분 [] 성능검사 신규 신청 []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		
	⑥ 성능검사 판정서 번호		
	⑦ 발급일	⑧ 유효기간 만료일	
	⑨ 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[] 자연형 시설 [] 저류시설 [] 장치형 시설 [] 여과형 시설 [] 인공습지 [] 소용돌이형 시설 [] 침투시설 [] 스크린형 시설 [] 식생형 시설 [] 응집·침전 처리형 시설 []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[] 그 밖의 비점오염저감시설 ()		
	⑩ 모델명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, 구조 및 제원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1부 2.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·화학적·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부 3.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·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.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(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 주기를 포함해야 함) 1부	수수료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
-------------	---	---

작성방법

1.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(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).
2. ④란의 주소에는 도로명 주소를 건물번호까지 적어야 하며,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.
3. ⑤란의 신청구분의 []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 - 가. ‘성능검사 신규 신청’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’을 말합니다.
 - 나. ‘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’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53조의3 제1항 후단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’을 말합니다.
4. ⑥ ~ ⑧란은 ⑤란에서 ‘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5. ⑨란의 ‘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’은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